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323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1.

주거

등록기준지

2. 김경천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오재준(기소), 원상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성한(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임윤성(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8. 17.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대구 달서구 죽전길 70(감삼동)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노회의 노회장, 피고인 김경천은 대구노회에 소속된 목사(노회원)이다.

대구노회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로 문서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대구노회 전체회의 또는 임원회를 열어 노회원 또는 임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발송하기 이전에는 대구노회 서기가 문서를 확인해야 하며, 문서 하단에 대구노회 명의, 대구노회 노회장 명의 및 대구노회 서기 명의로 된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대구노회 명의로 문서를 발송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경천은 대구노회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대구노회 사무간사

에게 피고인 김경천이 작성한 문서를 발송하도록 지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김경천은 2020. 5. 3.경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대구 서구 비산동 655-1에 있는 새샘교회 목양실에서 ① ‘총회 재판국 출석증언 사실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1매와 ② ‘ 의 절차상 불법 소원건과 소원권 상실자의 소원서 반려, 기각청원서’라는 제목의 문서 2매를 컴퓨터로 작성한 다음 파일을 USB에 담아 2020. 5. 4. 오전경 대구노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모 사실을 모르는 대구노회 사무간사 에게 건네 주어 대구노회 문서양식에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게 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는 2020. 5. 4. 08:12경 사무간사 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대구노회 서기에 게는 추후 자신이 말을 할테니 문서들을 총회에 발송해라”고 지시하여 위 각 문서의 하단에 대구노회 명의, 대구노회 노회장 명의 및 대구노회 서기 명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① ‘총회 재판국 출석증언 사실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1매와 ② 의 절차상 불법 소원건과 소원권 상실자의 소원서 반려, 기각청원서’라는 제목의 문서 2매(다음부터 위 각 문서들을 ‘이 사건 각 문서들’이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작성한 문서들을 2020. 5. 4. 11:00경 사무간사에 지시하여 팩스 및 우편을 통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총회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대구노회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믿고서 이 사건 각 문서들을 작성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대구노회 소속 서현교회의 장로인 등 5명은 2018. 7. 29.경 여성 교인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사유 등으로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을 대구노회에 고소하였고(다음부터 ‘제1 고소’라 한다), 위 교회의 집사인 등 9명은 2018. 11. 24.경 이 설교사역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하고 자녀학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대구노회에 고소하였다(다음부터 ‘제2 고소’라 한다).

○ 대구노회 재판국은 2019. 4. 12.경 제2 고소에 대하여 목사직 무기정직

및 수찬정지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고(다음부터 ‘제1 판결’이라 한다), ○은 이에 불복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상소하였다. 총회 재판국은 2019. 9. 24.경 제1 판결에 대한 ○의 상소에 관하여 ‘예배모범 위반, 학자금 부당수령 전에 대하여는 혐의가 경미하며 대구노회 재판국의 법 적용 역시 적절하지 않다. 여성도 고소 건(제7계명)에 대하여는 확실한 증거가 불충분하나 목사로서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한 것 역시 범죄이다’라는 이유로 제1 판결을 변경하여 정직(노회 판결일로부터 10개월)의 판결을 하였다.

○ 또한 대구노회 재판국은 2019. 7. 16.경 제1 고소에 대하여 ○ 목사직 면직, 제명, 출교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고(다음부터 ‘제2 판결’이라 한다), ○은 이에 대하여 재판국 설치의 하자, 이중처벌금지원칙 및 권징조례 헌법 위반, 상소권 침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상소하였다.

○ 한편, 대구노회는 서현교회의 청원에 따라 2020. 2. 14. ○에 대하여 위임목사 해약 및 목사회원 무효의 결의를 하였고, ○은 이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총회는 2020. 3. 20. 및 2020. 4. 14. 소원장을 반려하였다. 이에 ○은 2020. 4. 20. ‘이의신청서’, 2020. 5. 3. ‘상소인 답변서’를 각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제출하였는데, 총회는 대구노회가 2020. 5. 4. 이 사건 각 문서들을 제출하자 2020. 5. 22. ○에게 ‘귀하의 소원장이 이미 2차례 걸쳐 반려된 사실과 대구노회가 제출한 이 사건 각 문서들에 의거하여 상기 두 건의 서류는 반려하고 향후 귀하가 제출하는 서류는 다루지 않기로 결의되었기에 이를 통지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지하였다.

○ 이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은 2020. 9. 21.경 제2 판결에 대한 ○의

상소에 대하여 '총회의 권징권은 총회에 소속된 교회의 교인, 직원과 각 치리회에게만 행사된다. 대구노회가 2020. 2. 14. 에 대하여 목사회원 무효결의를 하였고, 그 결의가 유효하므로 총회는 에 대하여 권징권이 없다'라는 이유로 상소를 기각한 다는 판결을 하였다.

○ 한편, 대구노회는 2019. 3. 5.경 제96회 정기회에서 서현교회 재판 관련 대책팀 구성 청원에 대하여 임원회에 맡겨 위원을 구성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대구노회 임원회는 2019. 10. 15. 제4차 임원회에서 피고인들 및 을 위원으로 선정하면서 대책팀(다음부터 '이 사건 대책팀'이라 한다)에 '서현교회 재판건의 총회와 총회재판국에 대한 법적·행정적 일괄처리를 위임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 이 사건 각 문서들은 목사회원 무효결의 등에 대한 소원장이 반려되었음에도 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이의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총회 임시회가 잡히자 긴급히 이 사건 대책팀에서 문서작성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김정천이 총회에 제출하기 위해 팀장인 팀원인 피고인 등과 논의하여 대구노회 명의로 작성한 후 노회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 가 사무간사에게 지시하여 총회에 발송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총회 재판국이 2020. 9. 21. 에 대한 위 목사회원 무효결의가 유효하므로 총회는 에 대한 권징권이 없다'는 이유로 제2 판결에 대한

의 상소를 기각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문서들과 서현교회 재판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은 이 사건 대책팀이 제96회 정기회에서 조직된 비상설기구로서 제97회 정기회(2020. 4. 13.~2020. 4. 14.)에서 연장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체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후인 2020. 7. 10.자 대구노회 임원회 회의록에서 이 사건 대책팀

이 작성한 총회 재판국 청원서에 대한 경유청원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제 2 판결에 대한 의 상소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2020. 9. 21.에 이르러서야 나온 점, 이 사건 대책팀의 팀장인 이 2021. 4. 5.경 대구노회에 이 사건 대책팀의 업무경과를 보고하고 그 해체를 청원하여 2021. 4. 5. 대구노회 제99회 정기회에서 위 해체청원이 결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책팀은 2021. 4. 5.까지 유효하게 존속하면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 대구노회 제97회기 임원들 중 노회장인 피고인 를 제외한 임원들(서기 포함)은 2021. 3. 8. 이 사건 각 문서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발송된 문서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 대구노회 헌장(규칙) 제7조는 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회장은 회무를 통솔·지휘하고 서기는 회중 일체의 문무와 통신 및 사무를 장리하며 총회 보고건을 준비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도정원 _____